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사후1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현재 견본주택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방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해제 되었으나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입주 진행 중인 아파트로서 발코니 비확장이 불가하며, 추가 선택품목 설치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1차)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1.(수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019 입니다.(청약자 나이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09.(목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767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간

-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X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02월 26일(월요일)	02월 29일(목요일)	03월 04일(월요일)	03월 08일(금요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li> <li>청약통장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li> </ul>	입주지원센터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66동 앞)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9A타입은 복도식 구조로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3.11.10.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660-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74개동, 총 6,702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3세대
- 입주시기 : 최초 입주개시 2023년 11월 30일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2024년 06월 07일(금)까지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
- 공급 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아파트 코드)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4910019	01	034.9950A	34A	1	140	302
		02	059.9742A	59A	1	151	406
		03	132.8174A	132A	1	162	202
계					3	-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동별/라인별	층구분	세대수	아파트 분양가격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4.06.07
034.9950A	34A	140동 2호	3층	1	466,335,100	190,474,900	656,810,000	65,681,000	591,129,000
059.9742A	59A	151동 6호	4층	1	916,453,800	374,326,200	1,290,780,000	129,078,000	1,161,702,000
132.8174A	132A	162동 2호	2층	1	1,556,589,800	635,790,200	2,192,380,000	219,238,000	1,973,142,000

## ■ 공동 유의사항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계약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추가선택 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대금(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본 주택은 입주 진행 중인 아파트로서 발코니 비확장이 불가하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포기)	동 호	발코니 확장 및 옵션가			계약금(10%)	잔금(90%)
		발코니확장	유상옵션가	계	계약시	2024.06.07
34A	140동 2호	15,400,000	-	15,400,000	1,540,000	13,860,000
59A	151동 6호	31,500,000	-	31,500,000	3,150,000	28,350,000
132A	162동 2호	72,200,000	-	72,200,000	7,220,000	64,98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	KEB하나은행	201-922126-93137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발코니확장 계약금	KEB하나은행	201-922059-92537	현대건설(주)
아파트 분양금액 잔금 및 발코니확장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됩니다.
  -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가산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계약,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시 수입인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쏘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2.29 (목) ~ 2024.03.09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2.29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동서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인감도장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해외체류 (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의 연수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포함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외 체류기간 연속 일 연간 일 초과 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1.(수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일정 안내**

구분	서류제출기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2024.03.04.(월) 10:00 ~ 16:00	2024.03.08.(금) 10:00 ~ 16:00	입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66동 앞)
예비당첨자	추후 안내 예정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 및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동·호수 선정 후 당일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상호명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7,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법인등록번호	114671-0031594	110111 - 0007909	110111-6740008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7.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www.applyhome.co.kr))

■ 분양문의 : 02-2058-215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